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강화〉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22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05.
3. 회 부 일 : 2024. 7. 0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 및 “공판기록” 등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15호) 제8조의3¹⁾ 및 제8조의4²⁾를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1) 안 제8조의3(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이 경우 “소송기록”은 “서류등”으로 본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9조 및 제413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안 제8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 ① 법원은 피해자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안에서 준용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관련하여,
 -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이하 “피해자등”)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³⁾의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이하 “서류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 검사는 그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하되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⁴⁾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3)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4)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아니할 수 있음.

- 또한 검사가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공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관련하여,

- 재판장은 피해자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증거보전 후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⁵⁾”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⁶⁾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하고,
-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증거보전 후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에 관한 근거 규정은 피해자 변호인 특례가 규정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음

6) 안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③ 법원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⑥ (생략) <u><신설></u>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⑤·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5(「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u>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는 “스토킹범죄”로 본다.</u>

2. 검토의견

□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⁷⁾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해자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 재판장이 피해자의 권리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음.

○ 또한 재판장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도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이처럼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권한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재판장에게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제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그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비일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⁸⁾되고 있음.

7)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8) 실무에서는 법원이 열람·등사의 대상을 공소장, 증거목록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고, 규정자체가 재판장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재판부별 허용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김광현,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 6. 27.

○ 특히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⁹⁾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검사보관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새롭게 부여하는 한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¹⁰⁾의 특례로서 피해자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 허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참고로 개정안과 더불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소송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법원의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9) 2022년 5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기절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서, 해당 피해자가 1심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나 재판기록에 전혀 접근할 수 없어 논란이 되었음.

10)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201409호)과 각 범죄에 대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사항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201409호) 등 6건의 법률안¹¹⁾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 현행법 제17조의4¹²⁾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변호사에게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즉,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

-
- 11)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201415호)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201419호)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201421호)
 ④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201423호)
 ⑤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201427호)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201418호)

- 12)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변호사는 현행법 제17조의4에 따라 증거보전 후 또는 소송계속 중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현행법이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형사소송법」과는 별도로 소송기록 관계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일반 범죄피해자보다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른 열람·등사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현행법은 명문상 피해자 변호사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권만 명시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소송내용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 개정안에 따라 소송기록 등의 실질적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가 사유로서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스토킹범죄의 경우 2차 피해 또는 보복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함께 제출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201409호)을 준용함으로써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특별히 죄질이 중한 범죄로 한정하여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입법조사처¹³⁾는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 소송기록 등 관련 정보의 확인은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기억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기록을 살펴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취사하거나 변형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고

○ 다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열람·등사권 보장은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개선방안으로서 ①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 구조의 마련 ② 불복방안의 마련과 불허 이유의 통보 ③ 실무의 인식변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제안 하였음.

13) 김광현,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 6. 27.

-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 권리를 확대하여 범죄피해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절차진술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70